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민병덕 · 한민수
윤종균 · 박지원 · 이재관
김준혁 · 이정문 · 박정현
조정식 · 김남희 · 전진숙
고민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,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, 임원과 이사회, 교육부장관의 지도·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, 기관 운영의 투명성, 관리·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이에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·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).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)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원장이 아닌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, 원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⑤ 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

때

2.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

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3(교육환경보호원의 이사회)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4(교육환경보호원의 지도·감독) ① 교육환경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환경보호원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

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원에 정관의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환경보호원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)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원장이 아닌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, 원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</u> <u>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.</u> <u>④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u> <u>⑤ 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</u> <u>⑥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</u>

<신 설>

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

2.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

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3(교육환경보호원의 이사회)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

<신 설>

<신 설>

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4(교육환경보호원의 지도·감독) ① 교육환경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환경보호원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원에 정관의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

원 의제) 교육환경보호원의 임
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
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
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